2013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

2013. 1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3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 주요 변경사항만 기재함. 세부 변경사항은 본문 확인

<table>
<tr><th>사업명</th><th>2012년도</th><th>2013년도</th><th>비 고</th></tr>
<tr>
<td>12. 지역아동센터</td>
<td>Ⅱ. 사업계획
1. 사업개요
다. 보조금 지원
○ 기준액 : 이용아동 및 상근종사자 수에 따라 월 355원~465만원 차등 지원
<table>
<tr><th colspan="2">유형별</th><th>정원</th><th>상근 종사자</th><th>'12년 지원 기준액</th></tr>
<tr><td colspan="2">소규모형 (도시)</td><td>19인 이하</td><td>2</td><td>3,550천원</td></tr>
<tr><td rowspan="2">표준형</td><td>읍면</td><td>19인 이하</td><td>2</td><td rowspan="2">3,750천원</td></tr>
<tr><td>도시</td><td>29인 이하</td><td>2</td></tr>
<tr><td rowspan="2">확대형</td><td>읍면</td><td>29인 이하</td><td>2</td><td>3,950천원</td></tr>
<tr><td>도시,읍면</td><td>30인 이상</td><td>3</td><td>4,650천원</td></tr>
</table>
</td>
<td>Ⅱ. 사업계획
1. 사업개요
다. 보조금 지원
○ 기준액 : 이용아동 및 상근종사자 수에 따라 월 380원~520만원 차등 지원
<table>
<tr><th colspan="2">유형별</th><th>정원</th><th>상근 종사자</th><th>'13년 지원 기준액</th></tr>
<tr><td colspan="2">소규모형 (도시)</td><td>19인 이하</td><td>2</td><td>3,800천원</td></tr>
<tr><td rowspan="2">표준형</td><td>읍면</td><td>19인 이하</td><td>2</td><td rowspan="2">4,000천원</td></tr>
<tr><td>도시</td><td>29인 이하</td><td>2</td></tr>
<tr><td rowspan="2">확대형</td><td>읍면</td><td>29인 이하</td><td>2</td><td>4,200천원</td></tr>
<tr><td>도시,읍면</td><td>30인 이상</td><td>3</td><td>5,200천원</td></tr>
</table>
</td>
<td>보조금 지급 기준 등 변경</td>
</tr>
<tr>
<td></td>
<td>2. 운영비 지원기준 및 절차
가. 운영비 지원시설 선정방법 및 기준
(3) 운영비 지원중단 및 감액지원 대상 범위 설정

<신 설>

나. 기본운영비 지원
(4) 이용 아동 및 종사자수 산정기준
○ 이용 아동수 산정
- 지역아동센터 등록아동 중 지급월 직전 3개월간 1일 평균이용 아동수

다.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지</td>
<td>2. 운영비 지원기준 및 절차
가. 운영비 지원시설 선정방법 및 기준
(3) 운영비 지원중단 및 감액지원 대상 범위 설정
○ 아동 학대 등 법령 위반 시설에 대한 운영비 감액

나. 기본운영비 지원
(4) 이용 아동 및 종사자수 산정기준
○ 이용 아동수 산정
- 지역아동센터 등록아동 중 지급월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이용 아동수로, 월평균 이용아동수는 월 운영일수의 70% 이상 이용아동으로 함

다.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지역</td>
<td>

토요운영 지원비상향</td>
</tr>
</table>

사업명	2012년도	2013년도	비 고
12. 지역아동센터	역아동센터 사업지원 (4) 지원금액 : (단, 토요운영은 40만원 이내)	아동센터 사업지원 (4) 지원금액 : (단, 토요운영은 53만원 이내)	조정
	라.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 (선정대상) 서비스 제공수준이 높은 시설을 거점센터로 지정	라.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 (선정대상) 서비스 제공수준이 높은 시설이나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로서 1년 이상 운영한 시설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선정대상 및 역할 추가
	아. 거점형 및 특수목적,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사용방안 - 종사자 업무확장, 근로시간 연장 등으로 기존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30%내에서 수당지급 가능	아. 거점형 및 특수목적,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사용방안 ○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 기본운영비 사용기준과 별도로 관리되며, 프로그램 최소40%이상, 인건비 및 운영관리비의 합은 최대60% 이하로 사용(기존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 다만, 추가지원 예산으로 신규인력을 채용시 전액 인건비 사용 가능 - 프로그램비 등 사용항목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집행 ○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 추가 지원금을 기본운영비 지원금에 포함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의 운영비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 - 다만, 추가지원 예산으로 신규인력을 채용시 전액 인건비 사용 가능	종사자 수당 지급 기준 변경 등
	3. 시설 신고 기준 및 절차 가. 시설입지 및 설비 기준 <신 설>	3. 시설 신고 기준 및 절차 가. 시설입지 및 설비 기준 ○ 신규 설치 및 이전 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 제1호 가목) <세부 변경사항은 본문 확인>	시설설치 기준 추가
	나. 종사자 배치기준	나. 종사자 배치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종사자 배치기준 변경

사업명	2012년도	2013년도	비 고
12. 지역아동센터	<신 설> 다. 종사자 자격기준 <신 설>	별표11) - 2012.8.5일부터 10인 미만 시설은 신규 설치 신고 할 수 없음 다. 종사자 자격기준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12, 부칙 제3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직종별 자격기준(시설장, 생활복지사)을 갖추어야 함 **<변경된 자격기준 및 경과규정 등 세부 변경사항은 본문 확인>**	종사자 자격기준 변경
	<신 설> 사. 변경신고(시설명칭, 시설장, 소재지, 정원) ※ 시설의 장은 변경신고가능, 시설의 설립주체인...(중략)....시설장 변경은 가능하나 대표 변경은 불가) 자. 운영주체의 특례 <신 설> 나. 종사자 관리 <신 설>	사. 신규 시설 운영컨설팅 참여 의무화 아. 변경신고(시설명칭, 시설장, 소재지, 정원) ○ 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는 시설의 장에 대해 변경 신고 가능하나, 시설의 운영주체(대표자)에 대한 변경 신고는 불가함. 운영주체 변경시 폐지 신고 후 신규 시설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산 지원은 신규 시설과 동일하게 처리) 자. 운영주체 변경의 특례 (4) * 기존 지원 운영비의 50% 감액지원은 2년으로 하되, 운영주체 변경 후 1년간 사업실적에 대한 심화평가 결과 최저기준(Non-pass) 이상인 경우 지급 가능 (심화평가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 나. 종사자 관리 ○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 제75조 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종사자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사업명	2012년도	2013년도	비 고
12. 지역아동센터	마. 종사자 교육 (3) 지역아동센터 진입교육 ○ 대상 및 시기 : 상하반기(시설장 또는 생활복지사) <신 설>	마. 종사자 교육 (3) 지역아동센터 진입교육 ○ 대상 및 시기 : 상하반기(2012~13년 신규 시설장) ○ 교육시간 : 집합교육 15시간, 온라인 교육 70시간, 현장실습 20시간('13년도 신규 설치한 시설부터 적용), 시도지원단 운영컴설팅 15시간	종사자 교육시간 세부규정 마련
	5. 시설운영 가. 운영시간 <신 설>	**5. 시설운영** 가. 운영시간 ○ 근로자의 날(5.1)은 아동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종사자 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무 가능 ○ 태풍 등 재해로 시군구 내 휴교령이 발생한 경우 지역아동센터는 휴무를 원칙(운영일수에는 포함)으로 하고, 휴무에 대한 사항을 보호자, 이용아동 등에게 알려야 함	이용아동 관리강화
	마. 운영위원회 운영 ○ 반기별 1회 이상 개최(운영위원회 결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분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함) <신 설> 바.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 <신 설>	마. 운영위원회 운영(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 반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재적의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수시회의 개최 ○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설치□운영하여야 하며,(이하중략) 바.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아동복지법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동법 시행령 제58조 과태료 부과기준(1차 위반 10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에 의해 처분됨	
	6. 예산(운영비)사용	6. 예산(운영비)사용	

사업명	2012년도	2013년도	비 고
12. 지역아동센터	가. 운영비 사용 (2) 사용기준 ○ 운영비 사용의 제한 <신 설> 다. 후원금 ○ 후원금영수증 발행 등 <신 설>	가. 운영비 사용 (2) 사용기준 ○ 운영관리비 사용의 제한 <세부 변경사항은 본문 확인> 다. 후원금 ○ 후원금영수증 발행 등 * 법인 산하의 시설이더라도 법인의 후원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시설 고유의 후원금 계좌를 두어야 함 ('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 지적사항)	후원금 관리 강화
	8. 지역아동센터 2012년 평가 가. 평가대상 ○ 신규진입평가 - 2010년 신규설치 시설(2010년 평가 불참 및 미흡시설 포함)	8. 지역아동센터 2013년 평가 가. 평가대상 (※세부사항은 별도공문시행 예정) ○ 신규진입평가 - 2011년 1월~ 2012. 2월까지 신고, 운영중인 신규센터	평가분류, 평가결과의 활용 등변경사항 안내
	마. 평가결과 <신 설>	마. 평가결과 <세부 변경사항은 본문 확인>	
	Ⅲ. 협조사항 1. 지자체 행정사항 나. 지자체 협조사항 ○ <신 설>	Ⅲ. 협조사항 1. 지자체 행정사항 나. 지자체 협조사항 ○ 신규 시설 운영컨설팅 참여 의무화에 따른 협조	신규시설 운영컨설팅 의무화에 따른 협조사항 명시

12. 지역아동센터 운영

Ⅰ. 사업개요 / 351

Ⅱ. 2013년 사업계획 / 354

Ⅲ. 협조사항 / 399

12 지역아동센터 운영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아동복지법 제52조)

2. 기본개념

- 취약 계층 아동 지역사회 보호개념 실현 :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급식지원으로 결식의 예방
- 교육적 기능 :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학교 부적응 해소, 일상생활 지도,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
- 정서적 지원 :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 강화
- 문화서비스 제공 :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동에 대해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 제공
- 지역사회연계 :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지원 강화, 지역사회 내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3. 추진전략

- 지역사회 차원에서 아동 보호체계 구축
  - 취약 계층 아동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방안 강구
  -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 활용을 통하여 통합적 아동지원체계 구축
- 가정□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호 연계 체계 마련
  - 부모의 입장에서 양질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신뢰감 및 공감대 형성
  - 지역사회 차원의 공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운영수준 제고
- 아동의 요구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운영
  - 이용 아동의 성장발달에 부합하고, 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과 질이 담보되는 프로그램 운영
-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추진 기관 간 서비스 연계 □조정 협조체계 마련

4. 추진현황

- 연도별 지원현황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지원 개소	500	800	902	1,800	2,088	2,788	2,946	3,260	3,500	3,742
지원 단가 (만원/월,개소)	67	200	200	200	220	상반기 : 220 하반기 : 320	320	370	395	420
예산 (억원)	12	73	98	206	282	457	543	695	787	905

연도별 시설운영 현황

(단위 : 개소)

지역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	2010	2011	2012.6월
합계	895	1,709	2,029	2,618	3,013	3,474	3,690	3,985	4,003
서울	104	157	210	262	302	354	367	395	395
부산	43	95	110	134	155	171	185	194	192
대구	21	28	35	60	75	115	147	171	173
인천	58	105	117	143	157	175	174	182	183
광주	39	80	92	143	164	201	218	272	276
대전	24	62	83	122	133	139	144	149	146
울산	17	33	41	49	51	54	52	56	55
경기	192	336	402	534	601	656	679	722	729
강원	41	94	102	114	139	159	159	164	163
충북	56	102	118	137	156	176	185	201	201
충남	39	79	87	125	151	181	200	216	210
전북	59	130	147	173	212	255	267	286	289
전남	87	182	216	279	307	343	368	399	397
경북	34	91	108	143	164	206	232	252	254
경남	66	106	128	158	189	219	244	254	256
제주	15	29	33	42	57	70	69	72	72
세종									12

Ⅱ 2013년 사업 계획

1. 사업 개요

가. 2013년 사업 추진 방향

-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운영기준, 아동관리, 종사자 역량 강화 추진
- 지역아동센터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 등 투명성 강화
-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아동보호체계 마련

나. 개 요

- 기간 : 2013년 1월 ~ 12월 (12개월)
- 지원 개수 : 3,742개소
- 지원 조건 : 자치단체 경상보조(보조율 : 서울 30%, 지방 50%)

다. 보조금 지원

- 지원 시설 : 기 지원시설 및 2013년도 지역아동센터 진입평가 시설
- 기준액 : 이용아동 및 상근종사자 수에 따라 월 380만원~520만원 차등지원

유형별		정원	상근 종사자	'13년 지원 기준액	비고
소규모형(도시)		19인 이하	2	3,800천원	※ 농촌형 30인 이상은 도시 확대형의 20만원 추가지원 가능
표준형	읍면	19인 이하	2	4,000천원	
	도시	29인 이하	2		
확대형	읍면	29인 이하	2	4,200천원	
	도시,읍면	30인 이상	3	5,200천원	

※ 지방재정이 가능한 경우 지원시설, 지원 금액을 추가하여 지원 가능

라. 추진 체계도

추 진 주 체		기 능 및 역 할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지역아동센터 운영 기본 계획 수립 ○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및 표준화 모델 개발 □보급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침 마련, 국고보조 등 사업 총괄 ○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기관간의 서비스 연계□조정 등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종사자 인력 교육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데이터 및 실적관리 ○ 아동복지교사 실적관리 및 교육지원 등 ○ 지역아동센터 평가사업 지원 ○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사업 조정□평가 등 총괄 운영 및 지원 ○ 지역아동센터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지역아동센터 홍보 및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 지역아동센터 민간자원 개발□연계 지원
시□도	담당부서	○ 시□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기본 계획 수립 ○ 시□군□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예산 지원 등 ○ 시□도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 시□도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기관간의 서비스 연계□조정 등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 시□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시□도 지역아동센터 홍보 및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 시□도 종사자 인력 교육 실행 ○ 시□도 지역아동센터 컨설팅 지원 ○ 시□도 지역사회 조사연구사업 및 정보관리 및 데이터 관리□운영 ○ 시□도 아동복지교사 교육지원 등 ○ 시□도 지역아동센터 민간자원 개발□연계 지원
시□군□구 담당부서 또는 드림스타트 센터		○ 시□군□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계획 수립 ○ 시□군□구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신청□확인 ○ 아동복지교사 파견관리 ○ 지역아동센터 신고 및 관리□운영지원 ○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예산 지원,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등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지자체 협조 등

2. 운영비 지원기준 및 절차

가. 운영비 지원시설 선정방법 및 기준

(1) 운영비 지원 시설 선정 기준

- 2012년 운영비 지원시설 중 시군구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
- 2011년 신규설치 시설 중 신규 진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

(2) 운영비 지원시설 선정방법

- 지자체는 자체 “운영비 지원시설 선정기준”에 따라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선정
- 농산어촌(읍면)에 소재하고, 인근에 방과후 돌봄시설(방과후 학교, 타 센터 등)이 없는 지역아동센터는 지자체 선정심사위원회의 별도 심사 후 지원

(3) 운영비 지원중단 및 감액지원 대상 범위 설정

- 신규 진입평가 결과 최저 기준점(60점) 미만시설 : 운영컨설팅 의무실시, 3개월 후 재평가 실시 (재평가 비용 전액 자부담)
  - * 신규 진입평가 결과 최저기준점 미만 시설은 운영컨설팅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미 참여시 재평가를 받을 수 없음
  - * 신규진입평가 결과는 절대평가지표에 따라 점수로 산정하고 최저기준점을 60점으로 하고, 미흡(60~69점, D), 보통(70~79점, C), 양호(80~89점, B), 우수(90점이상, A)로 분류함
- 신규 진입평가 결과 미흡시설(60점~69점) : 미흡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컨설팅 의무실시
- 신규 진입평가 미 참여시설
  - 원칙적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군구 점검 결과 미흡 또는 부적격 시설

- 부적격 또는 미흡사항 개선을 위한 유예기간('13.3월말)*을 부여하고, 유예기간 경과 후 미개선 시설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차등지원

□시설, 종사자 기준 등 법령기준 미달 : 기본운영비의 50%이내 감액지원

□지침사항 등 경미한 위반사항 : 기본운영비의 30%이내 감액지원

* 지자체에서 별도 유예기간을 부여한 경우 지자체 유예기간 우선 적용

● 아동 학대 등 법령 위반 시설에 대한 운영비 감액

- 아동 학대□성폭력, 허위 실습확인서 발급 등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 운영비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 이내 감액지원

● 그 외 : "보조금지원 기준액"에 따른 차등 지원

※ 기준액 : □이용아동수 및 법적상근종사자□에 따른 차등 지원액

나. 기본운영비 지원

(1) 기본운영비 지원 개요

● 이용아동 및 종사자 수, 시설규모, 프로그램 내용 등에 따라 운영비 차등 지원

(2) 기본 운영비 지원방법

● 기준액 : 이용아동 및 상근종사자 수에 따라 월 380원~520만원 차등지원

유형별		이용 아동수	상근 종사자	'13년 지원 기준액	비고
소규모형(도시)**		19인 이하	2	3,800천원	(± 10% 가능)
표준형	읍면*	19인 이하	2	4,000천원	
	도시	29인 이하	2		
확대형	읍면*	29인 이하	2	4,200천원	
	도시,읍면	30인 이상	3	5,200천원	

* 읍□면지역 중 주민수 2만명 이상의 인구밀집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분류

** 기존 9인 이하 시설은 소규모형(도시) 운영비 기준의 60%이내(2,280천원)에서 지자체에서 지원결정 (읍면지역 포함)

*** 기존 운영비 차감시설은 진입평가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 조정 가능

**** 지방재정이 가능한 경우 지원시설, 지원 금액을 추가하여 지원 필요

(3) 기본운영비 지원시기

- 진입평가를 통과한 후 신고일로부터 24개월 이후 운영비지급

(4) 이용 아동 및 종사자 수 산정 기준

- 이용 아동수 산정
  -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중 지급월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이용 아동수로, 월평균 이용 아동 수는 월 운영일수의 70% 이상 이용 아동으로 함

▪ 이용아동은 지역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 타 시설 등을 중복하여 이용하지 않는 아동으로, 타 시설 이용아동이라 함은 초등돌봄교실(방과후 학교의 교과□특기적성 프로그램 이용 제외), 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보육시설(유치원 포함), 방과후 보육시설, 청소년 공부방 등을 중복 이용하는 아동으로 함
-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경우 농어촌 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으로 산정 가능

▪ 학교 행사, 본인 질병과 사고, 직계존속이나 친인척의 상례 및 혼례, 기타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인한 공결은 이용한 것으로 봄(가정 통신문, 행사 안내문, 청첩 등 첨부하여야 함)

▪ 이용아동 중 장애아동 1인은 1.5인으로 가산하여 산정하고 가산하여 산정된 아동수가 5인(장애아동 3인의 경우 이용아동 5명으로 산정)을 초과할 경우 추가된 장애아동의 수 만큼 1명씩 추가 산정함(장애아동은 등록 장애인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결과 장애 소견자에 한함)

- 우선 보호아동 산정
  - 이용아동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아동, 차상위□조손□다문화□장애□한부모 아동, 기타 승인아동 등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아동 60% 이상 유지하여야 함

- 종사자 산정
  - 종사자는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한 상근 종사자를 의미

□종사자가 육아휴직, 건강악화, 사망 등의 사유로 종사자 배치기준을 한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시설은 전임자 급여*(최저임금 이상)를 제외하고 지급

* 전임자 급여는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급여로 계산

- 지역아동센터 운영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종사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 즉시 통보

□지자체 통보 없이 보조금 부당 수령시 행정처분 및 해당 인건비 전액 환수

※ 지자체는 보조금 지급시 관련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고지

□단, 종사자 채용이 일시적으로 곤란할 때는 일정기간(농촌지역 3월, 도시지역 1월 범위 내)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인건비를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비로 사용 가능함

- 신고정원과 이용아동이 다른 경우 운영비 지원

□신고정원이 이용아동 보다 적은 경우 신고정원(시설기준 포함) 변경 후 지급

※ "신고정원의 축소에 따른 운영비는 3개월 정도 유예 후 반영하고, 정원 확대 변경에 따른 운영비 증액 등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예산부족 시 신규시설에 준함

다.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사업지원

(1) 지원 목적

-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수준에 따른 추가지원으로 시설의 운영역량 제고
- 거점형 및 특화서비스 제공 등 차별화 된 프로그램 운영 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수준 향상

(2) 지원 대상 : 약 2,000개소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500개소, 토요운영 1,500개소 내외)

- 시□군□구별 각 2개소(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선택가능) 및 토요운영 운영센터는 기존 운영센터수 40% 내외를 기본으로 시□도별 예산배분

※ 토요운영은 시군구에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센터 수 및 지원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

(3) 지원기간 : 2013. 1 ~ 12월 (12개월)

(4) 지원 금액 : 서비스 및 프로그램, 센터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단, 토요운영은 53만원 이내)

라.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 (선정대상) 국고보조 운영비 지원시설 중 운영 역량 및 서비스 제공수준이 높은 시설이나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로서 1년 이상 운영한 시설
  - 원칙적으로 시□군□구별 1개소 지정. 다만, 시□군□구 내 시설 수에 따라 탄력적 운영 (30개소 이상인 경우 2개소를 선정하거나 5개소 미만인 경우에는 미선정 가능)
- (기능 및 역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조직화 등 지역 인프라를 연계하여 지역내 돌봄서비스 수준 향상 제고

  <필수사업>

  -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조직화

    □시□군□구 지역아동센터 협의체 등 지역아동센터 네트워크 구성□운영

    □시□군□구, 드림스타트 및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과 연계하여 민간자원 공동개발□네트워크 시설에 대한 지원연계

  - 소규모□영세 지역아동센터 운영 역량 지원

    □지역내 타 센터에 대한 운영컨설팅

    □공동프로그램*개발□운영 등으로 멘토 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 보호, 교육, 문화, 아동정서지원, 지역사회연계, 사례관리

  - 신규 시설에 대한 현장실습 및 운영 컨설팅 실시

    □2013년 신규 설치 시설에 대한 현장실습기관으로 시설 운영 컨설팅 지원 등

  <선택사업>

  - 기타 지역사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동사업을 주관하여 추진
- (선정기준)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을 참조,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기준 마련
  - 운영주체 역량, 운영기간, 시설 여건, 평가□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자체기준 마련
  -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사업운영, 시설인프라, 지역사회 연계 등 노하우가 필요하기에 기존 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재심사 없이 연속하여 선정가능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

① 운영 기간 3년 이상, 신고정원 29인 이상이며, 타 시설 및 시군구와의 연계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 ② 평가지자체 점검결과, 운영상 하자가 없고 운영 역량이 우수한 시설 ③ 시설 전용면적 120.0㎡ 초과, 법적 시설 요건(사무실학습지도실조리실식당) 외에 도서관, 상담실 등 별도 공간 확보 시설 ④ 외부자원 연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운영 등 거점형 센터로서 요구되는 운영실적이 우수한 시설

마.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 (선정대상) 원칙적으로 시군구별 1~2개소 선정

① 장애, 다문화 새터민 아동 등 특수 전용시설을 운영하거나 특수 아동 비율이 타 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

* 장애아동은 등록 장애인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결과 장애 소견자에 한함

② 중고생 전용시설이나, 중고생의 비율(50% 이상)이 타 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

* 초등중고생 혼용 시설은 별도 공간이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

③ 야간(오후 8시 이후),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등 연장 운영으로 인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야간 운영 지원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

④ 지원대상(①~③)에 한하는 특수목적형 지원으로 시설별 재정지원 강화

- (선정기준)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을 참조하여,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기준 마련

  - 운영비 지원 시설 중 운영주체의 역량이 뛰어나고, 평가점검 결과 운영상 하자가 없고, 지원 대상 요건 증빙이 가능하며,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시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

① 지역적□환경적, 이용아동 특성에 따라 특수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시설 (장애, 다문화, 새터민, 중고생, 야간,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등) ② 지원대상 요건 증빙이 가능하거나 별도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있는 시설 ③ 평가□지자체 점검결과, 운영상 하자가 없고 운영역량이 우수한 시설 ④ 기타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

바.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 (선정대상) 주5일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라 이용아동 중 토요돌봄서비스 수요가 있거나 토요일 운영 시설 중 운영 역량 및 서비스 제공수준이 높은 시설
  - 지역아동센터 개소수의 40% 내외에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군구별 적정운영 개소 수 및 운영비 등 결정 가능
- (기능 및 역할) 지역사회의 토요돌봄서비스 욕구에 대한 연계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토요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른 현장대응력 강화
  - 지역내 토요돌봄서비스 욕구 조사 및 토요돌봄서비스 제공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인근 토요 미 운영센터 연계지원

    □지역사회 토요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선정기준)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을 참조,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기준 마련(반드시 주6일 이상 운영)
  - 운영주체 역량, 운영기간, 시설 여건, 평가□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자체 기준 마련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

① 토요돌봄서비스를 1년이상 운영하고 있고 타 센터와 연계가 가능한 곳 (이용아동에 따른 2개 이상의 센터 연계 운영가능) ② 이용아동 중 토요돌봄서비스 예상 이용 아동수가 많은 곳 ③ 평가□지자체 점검결과, 운영상 하자가 없고 운영역량이 우수한 시설 ④ 10회 이상 토요돌봄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있는 시설

사. 지원대상 선정방안

- (지자체)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 세부 운영계획 수립
  - 지자체(시도)는 지원 대상수, 시설선정 세부기준, 지원금액 등을 포함한 세부 지원계획 마련, 시행(시도 → 시군구)
- (시군구) 대상시설 선정
  - 시군구는 자체 기준 또는 지역사회의 추천 등을 받아 자격기준을 갖춘 지역아동센터에 신청 안내

    ※ 시군구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이 지원개소 보다 많은 경우 심사표 등을 활용하여 대상시설 선정

  - 신청의뢰를 받은 지역아동센터는 사업계획서<별도공문시행>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는 지원 희망시설의 사업계획서 제출받고,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

    ※ 심사위원회는 담당 공무원, 지역 내 타 복지 및 교육 기관(지역아동센터 제외) 종사자, 기타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심사자로 구성

  - 시군구는 배정된 예산(지원개소) 한도에서 선정하되,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등 운영시설 선정하여 <u>선정심사자료 및 선정된 시설의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보고</u>
- (시도) 시군구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에 대한 지원금액 결정
  - 시도는 시군구에서 선정 된 시설을 대상으로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지원기관 및 지원금액(안) 확정
  - 시도는 확정된 지원기관 및 지원액(안), 각 시설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 (복지부) 최종확인, 우수사례 공유 및 운영현황 모니터링
  - 시도로부터 최종결과를 제출받고 확인, 워크숍 개최 등으로 우수사례를 공유, 수시 및 중간 점검을 통해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

※ 최초 선정기준 및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하거나, 운영역량 미흡으로 판단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선정절차>

시설 선정 (시군구, '13.1.4)	○ 시군구에서 거점센터 등 지원 대상 선정 후 시도 보고('13.1.4) ○ 시군구는 시도의 확정결과 통보에 따라 '13년 1월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정 및 예산 지원
□	
시설 확정 (시도와 복지부,'13.1월)	○ 시도는 시군구의 선정결과를 확인하고, 복지부 및 시군구에 최종 통보('13.1.8) ○ 시군구는 시도 확인에 따라 대상시설에 예산지원
□	
정기실적 제출 (시설, '13.7월, '14.1월)	○ 지역아동센터는 실적을 시군구에 제출 ○ 시도는 시군구 실적을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점검 및 확인 (연 중)	○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중앙지도지원단 운영실태 현장점검 실시

아.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사용방안

●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 기본운영비 사용기준과 별도로 관리되며, 프로그램 최소 40% 이상, 인건비 및 운영관리비의 합은 최대 60% 이하로 사용(기존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 다만, 추가지원 예산으로 신규인력을 채용시 전액 인건비 사용 가능
- 프로그램비 및 운영관리비 등 사용항목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집행

●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는 추가 지원금을 기본 운영비 지원금에 포함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의 운영비 사용 기준에 따라 집행
- 다만, 추가지원 예산으로 신규인력을 채용시 전액 인건비 사용 가능

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시설 및 차등 지원액 결정시 가급적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
- 시도 아동복지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자(시군구 아동복지담당과장), 현장전문가, 아동복지관련 학계인사 등으로 4~6인 이내로 구성
  -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관련 위원회로 선정위원회 대체 가능

    ※ 현장전문가는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자로 하되, 이해 관계자인 관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제외 (타 지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가능)
- 시군구 선정위원회의 심사 의견 및 결과를 시도에 보고

차. 평가 또는 자체 점검 결과 미흡시설에 대한 운영 활성화 지원

- (컨설팅) 지역아동센터 중앙 및 시도지원단에서 실행하는 컨설팅 지원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운영총괄, 지역아동센터시도지원단 : 개별센터관리
- (교육 등) 관내 우수 시설과 멘토링제 또는 종사자 교육 실시
- (우수센터 방문) 복지부 또는 중앙지원단에서 추천하는 우수 시설 견학 실시
- (외부자원) 지역사회, 후원기관 등과 연계 추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협조, 사회공헌기업 등 후원기관 연결

카. 운영비 지급일

- 지역아동센터 예산 운영 안정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운영비 지급 기준일을 정하여 운영하되,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운영비 신청(센터→시군구) : 전월 15일까지 신청
  - 운영비 지급(시군구→센터) : 전월 25일이전까지 지급

    ※ 단, 1,2월 운영비 지원은 예산 편성·지급 등을 감안하여 예외로 하지만 최대한 빨리 지급하고, 신청 및 지급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지급일을 앞당겨서 지급함

3. 시설 신고 기준 및 절차

가. 시설 입지 및 설치 기준

- 신규 설치 및 이전 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함(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1 : 제1호 가목)
  - 단독대지 내에 시설이나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단 수평거리 측정
  - 공동주택 내에 시설이나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위치한 동 전체 건물이 아닌 해당 지역아동센터의 외벽을 기준으로 최단 수평거리 측정
- 신규 설치 및 이전 시설은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이고, 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다만, 집단지도실은 2개실 이상을 갖추어야 함(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1 : 제2호 바목)

  ※ 화장실은 전용면적에서 제외되며, 다만 이용아동의 안전을 위해 전용공간에 확보하도록 권장함
- 지역아동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복지사업, 타 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 사용 불가
- 신규 시설 설치시 시□군□구는 지역아동센터 재정적 안정 지원 등을 위해 지자체 유휴시설에 대해 무상임대 등에 대해 협조 할 수 있음

나. 종사자 배치 기준(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 11)

- 아동 30인 이상 :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2인(아동 50인 초과 시 1인 추가)
- 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 :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1인
- 아동 10인 미만 : 시설장 1인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2조 및 별표11, 부칙 제4조에 따라 아동10인 미만 시설 배치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기존 시설은 인정되나, 2012.8.5일부터 10인 미만 시설은 신규 설치 신고할 수 없음

다. 종사자 자격기준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2조 및 별표12, 부칙 제3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직종별 자격기준(시설장, 생활복지사)을 갖추어야 함
  - 시설장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 종전 규정('12.8.4 이전)인 사회복지사 3급 자격으로 근무하고 있는 시설장은 '18.8.31까지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2급이상 자격을 미취득하거나 경력요건 3년 이상을 갖추지 못하면 '18.9.1부터 시설장 자격 상실)
  - 생활복지사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등

    ※ 종전 규정('12.8.4 이전)인 사회복지사 3급 자격으로 근무하고 있는 생활복지사는 '15.8.31까지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2급 이상 자격을 미취득하는 경우 '15.9.1부터 생활복지사 자격 상실)

▶ 종사자 자격기준 유의사항 안내
-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신청하여 발급 가능(신청주의)

- 아동복지법시행령에서 종사자(시설장, 생활복지사) 자격기준 적용 유예기간까지 종전의 종사자(시설장, 생활복지사)는 타 지역아동센터 채용시 동일 직종(시설장→시설장, 생활복지사→생활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3345('12.9.10)호 :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유권해석 통보

직종별	자 격 기 준
시설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5.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생활복지사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 시설장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1.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 종사자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1. 제7조제3항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및 제71조(벌칙)

라.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 1회 50인 이상(종사자 포함)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에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함(식품위생법 제88조, 동법 시행령 2조)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식품위생법 제101조)

- 집단급식소를 설치하는 경우, 영양사 및 조리사 배치(식품위생법 제51조, 제52조)

  ※ 집단급식소의 의무(식품위생법 제88조 등) : 식중독 등 위생관리 철저, 영양사 업무방해금지 및 위생관리 사항 준수 등

마. 건축물 용도

- 건축물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1])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별도의 용도 변경 절차 없이 설치 가능

- 주택의 경우 주 용도가 생활 거주지인 특성상 지역아동센터 전용시설로의 활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예 : 운영자 개인시설로 사용 금지 등)

바. 신고 절차

-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적 여건, 지역아동센터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전 협의 후 설치 검토

▶ 보조금 지원기준에 관한 사전 안내사항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9조(비용보조)에 의거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가 등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조할 수 있음
- 따라서 신규시설 지원예산의 미확보, 운영실적이 미흡한 경우 등에는 상당기간 자부담 또는 지역내 후원 등을 통한 자체 운영이 불가피함

  ※ 2012년부터 진입평가 통과 후 신고일로부터 24개월 이후 운영비 지급

-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며, 관할 시□군□구청장은 설치 신고를 받고 심사를 거쳐 신고수리 후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함

  ※ 관련 서류 중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적정한 운영을 담보하여 이용아동에게 돌봄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계획 및 재원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필요

※ 재정운영계획에는 신고시설과 동일한 규모의 운영비 지원액에 상응하는 운영비(최소24개월) 및 월 임차 시설의 경우 시설운영기간(최소60개월) 중 임대료 확보방안을 반드시 포함할 것

- 신고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신고심사를 하는 경우

① 지역적 특성, 아동 수요, 입지 조건, 관련규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사회 내 센터의 균형 있는 설치 및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등을 모색

※ 시□군□구에서는 아동들의 돌봄서비스 욕구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의 적정 설치 유도 및 수급균형 도모

※ 수급계획에 따라 지역내 돌봄서비스 수요에 따라 시설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예산범위(지자체 예산확보 노력 등) 내에서 보조금 조기지급 또는 차등 지급(-50~20%이내) 가능함

지역별 돌봄서비스 수요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적정한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한 점진적이고 균형적인 예산배분 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예정(설치 장려지역 및 과밀지역 등 돌봄 수요에 따른 운영비 차등지급 예정)

② 신고대상 시설이 지하나 반지하, 5층 이상인 경우에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 시설 설치 지양(권고사항)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및 제7조제3항,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2조, 형법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및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의거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등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자의 신고 수리를 유보하고, 생활복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채용을 배제하도록 하여 신고증 교부

④ 건축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시설물 기준 준수 확인

사. 신규 시설 운영컨설팅 참여 의무화

- 시□군□구는 2013년도 신규 시설에 대해 신고 후 15일 이내에 시도지원단에 신고사실을 통보하고 시도지원단은 운영컨설팅계획을 작성하여 신규시설 및 거점센터에 통보하여야 함

- 거점센터는 신규 시설에 대한 현장실습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종료 후 시도지원단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시도지원단은 6개월 이내 신규 시설에 대한 운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운영 컨설팅 종료 후 시군구 및 중앙지원단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신규 시설이 운영컨설팅을 받지 않는 경우 진입평가를 받을 수 없음)

아. 변경 신고(시설 명칭, 시설장, 소재지, 정원)

- 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대표자)가 시설의 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또는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 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는 시설의 장에 대해 변경 신고는 가능하나, 시설의 운영 주체(대표자)에 대한 변경신고는 불가함. 운영주체 변경시 폐지 신고 후 신규 시설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산 지원은 신규 시설과 동일하게 처리(개인시설의 대표와 시설장이 동일할 경우, 시설장 변경은 가능하나 대표자 변경은 불가)

자. 운영주체 변경의 특례

(1) 실제 운영주체는 법인이나, 법인 대표명으로 신고하거나 법인명과 법인 대표명을 병기(예, 법인A(대표자B)→법인A(대표자C))하여 신고한 경우

- 기존시설 폐지 후 신규시설로 신고수리(법인 신규시설 심사와 동일하게 처리) 하되, 신규 신고 증에는 법인명만 기록
- 실제 운영주체가 법인임을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대표자 발령공문 등을 심사하여 기존 시설과 동일하게 운영비 지원

(2) 타 법령에 의해 시설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 선거 당선, 사망 등 신고시점 이후 타 법령에 의해 시설 운영이 불가하여 운영주체를 변경하는 경우
- 폐지 후 신규시설로 신고수리 하되, 운영비는 기존시설과 동일하게 지원

(3) 개인이 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으로 운영주체를 변경하는 경우

- 당초 운영주체가 개인이었으나, 운영 내실화 등을 위하여 법인으로 운영주체를 변경하는 경우 운영주체 변경의 특례 인정
- 폐지 후 신규시설로 신고수리 하되, 운영비는 기존시설과 동일하게 지원

* 법인인 경우로 한정하고, 비영리 민간단체는 제외

(4) 운영주체 변경에 따라 시설 폐지 후 신규로 신고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하지 않으나 종사자 또는 이용아동의 변동이 없고 시설의 운영주체만 변경되었을 경우 이용아동의 안정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 지원 운영비의 50%이내 지급 가능함

※ 기존 지원 운영비의 50% 감액지원은 2년으로 하되, 운영주체 변경 후 1년간 사업실적에 대한 심화평가 결과 최저기준점(Non-pass) 이상인 경우 지급 가능(심화평가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

4. 인력(종사자) 관리

가. 종사자 채용

-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의 주민등록등본, 채용 신체검사서, 자격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지역아동센터에 보관, 관리
- 201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시설 등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15일 이상 채용 관련된 사항을 공고한 후에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 채용, 퇴직 등 임면시에는 채용 즉시 그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원활한 종사자 관리운영에 협조
  -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 채용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 제3항에 따라 채용 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관할 경찰서)하고, 지자체에 임면 보고시 함께 보고
  - 성범죄 경력 조회가 필요한 종사자는 취업중인자 또는 취업예정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함(법 제44조 3항)

*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자원봉사자를 제외하고, 대가(급여)를 받고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포함(조리사, 영양사, 프로그램 강사, 사회복무요원, 일자리사업 인력 등)

- 성범죄 조회 결과 통보 전까지 종사자의 지역아동센터 근무 제한

- 운영주체(대표자)는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가 될 수 없고, 대표자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자를 종사자를 채용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시□군□구에 보고할 것

- 임면 보고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자격 조건이 필요한 종사자의 자격의 적격성(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5조 등)을 확인

나. 종사자 관리

-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퇴직금 적립 등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아동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므로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자는 각 지방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즉시 신고

※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 1577-1391(아동학대신고전화),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 제75조 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종사자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다. 종사자 처우 관련

(1) 목적

-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의 인건비 등 처우 관련 최저기준을 제시하여 보수 관련 업무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적용대상

-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생활복지교사 우선)에게 적용함.

(3) 인건비 지급최저기준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급 최저기준은 '12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안) 별표 1-4(복지관직원-관리직) 봉급지급 기준표 3급 1호봉 기준을 적용함(권장사항)

<별표1-4 복지관직원-관리직 봉급지급 기준표('12년 기준표)>

(단위:천원)

호봉	1급	2급	3급	4급(고용직)
1	1,544	1,475	1,406	1,335

※ 최저기준은 경력인정 및 승급에 따른 호봉변경은 인정하지 않고 1호봉을 기준으로 함. 단, 운영주체의 후원금 등 예산 범위에 따라 경력인정 및 승급 등은 자체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나 운영비 사용제한 범위를 적용받음 (예: 경력자 근속수당 등 지급가능)

※ 생활복지교사(시설장 제외)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비율 내에서 차감지급 가능

라. 종사자 복무 관리

(1) 종사자의 의무

-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배치 기준은 이용아동 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기준이므로, 종사자(시설장, 생활복지사)는 상근의무를 준수해야 함
-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 상근시간 : 지역아동센터 필수운영 시간을 포함한 8시간 이상

(2) 상근의무에 따른 시설장 겸직 제한 관련

- 시설장의 겸직은 지역아동센터 상근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읍·면)에 위치하여 시설장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아동의 주 이용시간에 근무 가능정도 등을 고려하여 겸직가능 여부 판단

- 시설장이 겸직하는 경우 근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고, 근무 상황부를 비치하여 출강 등 외출시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기재

  ※ 겸직 사전 미신고, 근무 상황부 미비치 및 허위 기재시 인건비 등 보조금 환수조치

- 다음 각 항에 해당할 시에는 원칙적으로 겸직 제한

  ① 근로계약서, 근무계획서, 실질적인 근무형태 등에 따라 겸직 시 근무시간의 지속적인 중첩이 불가피한 경우

  ※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비정기적 업무 겸직도 운영시간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

  ②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에 종사하여 상근 시간에 정상적인 시설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③ 타 법령에 의해 겸직이 제한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지방자치법 등)

(3) 행정사항

- 시□군□구청장은 시설장의 겸직활동 사전 신고시 겸직 제한 여부 심사
- 지자체는 정기적으로 종사자의 상근의무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철저
  -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보조금 환수 등 조치 이행

마. 종사자 교육

(1) 지역아동센터 <u>의무교육 (※ 세부사항은 별도 공문 시행 예정)</u>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본 사업의 소통과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u>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u>
- 대상 및 시기 : 연중(시설장 연초, 생활 복지사 연중)
- <u>교육시간 : 집합교육 5시간, 온라인교육 25시간</u>
- 교육기관
  - <u>집합교육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총괄계획, 지역아동센터시도지원단 실행</u>
  - <u>온라인교육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총괄계획,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실행</u>

(2) 지역아동센터 실무교육

- 목적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전문성을 확보
- 대상 및 시기 : 연중(시설장 또는 생활복지사 중 신청한 종사자 대상)
- 교육기관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총괄 계획, 지역아동센터시도지원단 실행

(3) 지역아동센터 진입교육

- 목적 : 지역아동센터 신규 신고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 대상 및 시기 : 상·하반기 (2012~13년 신규 시설장)
- 교육시간 : 집합교육 15시간, 온라인교육 70시간, 현장실습 20시간('13년도 신규 설치한 시설부터 적용), 시도지원단 운영컨설팅 15시간
- 교육기관
  - 집합교육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총괄계획,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온라인교육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총괄계획,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KB아카데미 실행
  - 현장실습 : 지역아동센터시도지원단에서 거점 지역아동센터 등을 현장실습기관으로 지정하여 실행
  - 시도지원단 운영컨설팅 : 지역아동센터시도지원단에서 운영컨설팅 실행

(4) 지역아동센터 자체교육

- 아동에 대한 이해, 아동의 권리 이해, 프로그램 운영, 업무규정 등에 대해 상세히 숙지하도록 자체교육 실시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에서<www.icareinfo.info>개발한 프로그램 적극 활용)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신규 종사자 교육 시행 예정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전문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안내

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하 '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시행일 : 2002년 1월 1일)

-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령까지만 정부보조금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지급상한 : 시설장 65세, 생활복지사 60세

※ 정부의 인건비 지급 상한 기준일 : 시설장 또는 종사자의 생일이 1월에서 6월사이인 경우 지급상한일자 6월 30일, 시설장 또는 종사자의 생일이 7월에서 12월사이인 경우 지급상한일자 12월 31일
※ 예시1) 시설장 생년월일이 1948.4.16 인 경우 지급상한일 : 2013.6.30
※ 예시2) 생활복지사 생년월일이 1953.8.13 인 경우 지급상한일 : 2013.12.31

⇒ 위 지급 상한기준은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부예산의 지급 기준이므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종사자가 비리를 자행할 경우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시설정년제 권고) 사회복지시설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정년을 정할 수 있으므로, 시설 사유화의식 탈피 및 조직쇄신 차원에서 정년제 실시를 권고함

5. 시설 운영

가. 운영시간

- 운영시간은 하루 8시간 이상 주 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함
- 학기중 및 방학□공휴일의 기본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이 하고, 센터별 여건 등에 따라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에 보고 후 변경 운영 가능

▶ **필수 운영 시간 (기본 운영시간 8시간)**
□학기 중 : 14:00~19:00 (필수 운영 시간)
□방학(단기방학 포함) 및 공휴일 : 12:00~17:00 (필수 운영 시간)
※ 필수 운영 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토요일, 공휴일 등의 운영은 지역여건과 센터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운영시에는 자원 봉사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아동이 방임되지 않도록 조치
- 근로자의 날(5.1)은 아동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사자 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 휴무 가능
- 태풍 등 재해로 시·군·구 내 휴교령이 발생한 경우 지역아동센터는 휴무를 원칙(운영일수에는 포함)으로 하고, 휴무에 대한 사항을 보호자, 이용아동 등에게 알려야 함

나. 운영 프로그램

- 보호 프로그램 : 빈곤·방임 아동 보호, 일상생활지도, 급식제공, 위생지도 등
- 교육 프로그램 : 학교생활준비, 숙제 지도, 기초학습 부진아동 특별 지도, 예체능 교육, 독서지도 등
- 놀이와 오락 :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 활동, 놀이활동 지원, 특기적성 등
-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 가정방문, 상담·정서적 지지, 부모·가족 상담, 후원자 등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 연계, 사례관리 등

다. 아동등록절차 등 아동관리

<참고> 지역아동센터 이용절차

절차	지역아동센터 읍·면·동 학교		드림스타트센터 또는 시·군·구 담당부서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시·군·구
업무 처리 절차	대상자 발굴	➔ 상담 신청	➔ 접수	➔ 돌봄필요 여부 등 자격확인	➔ 서비스 제공결정	➔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또는 확인		

(1) 아동등록절차

- 읍·면·동장 또는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은 돌봄서비스 희망 아동에 대해 보호자가 작성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신청서(서식 3호)와 기타 증빙서류(건강보험료 확인서류) 등을 신청 받아 시·군·구청 담당부서(또는 드림스타트센터)에 접수하여야 함

  ※ 학교에서 사용하는 부처 공동 돌봄서비스 신청서로 갈음하여 사용 가능

- 시·군·구(또는 드림스타트센터)에서는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돌봄서비스 및 기타 욕구에 대한 조사·상담 등을 실시하고 돌봄서비스 제공여부 결정하고 필요시 사례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함

  - 아동등록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취약계층아동, 기타 승인아동, 일반이용아동 등을 결정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통지(발굴한 지역아동센터에 우선 배정)

▶ 아동등록 우선순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아동

② 차상위 계층, 조손, 다문화, 장애, 한부모 아동

③ 기타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 전국 평균소득가구 70%이하(가구내 건보료 확인)가구 중 시·군·구청장 승인아동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045천원	30,890	13,458	31,346
		32,913	14,339	33,399
2인	1,939천원	57,666	48,989	58,450
		61,443	52,198	62,279
3인	2,876천원	84,926	91,922	85,690
		90,489	97,943	91,303
4인	3,315천원	98,184	111,830	99,456
		104,615	119,155	105,970
5인	3,390천원	100,613	115,173	101,998
		107,203	122,717	108,679

※ 6인이상 : 1인 추가시 마다 소득 75천원씩 증가 (75천원=5인-4인=3,390-3,315)

※ 건강보험료 하단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한 금액임

④ 맞벌이 가구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일반아동

- 돌봄서비스 제공기관별 이용아동 배치 현황, 이용자 시설이용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돌봄서비스 결정통지서(서식 4호)□사본과 함께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하여야 함

- 지자체는 시설 이용 아동에 대해 등록 명부를 작성 등 등록 관리하여야 함

(2) 출석관리

- 시설장은 이용아동 등록□관리를 위해 출석부(서식 2호)를 비치□관리하여야 함
- 출석 확인은 자필서명, 출석카드 등 출석확인이 가능한 방법을 활용
- 타 서류(급식 확인 서류 등)로 출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체 가능

※ 급식카드 또는 출결카드를 활용하여 출석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시 출석부 등의 서류는 비치하지 않아도 됨

(3) 아동 발굴 및 지원

- 지자체(드림스타트, 읍□면□동 포함) 및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내 빈곤□확대□방임 가정, 한부모□조손□소년소녀 가정, 맞벌이□이혼가정의 아동□다문화 가정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적극 발굴□보호하여 아동방임을 예방할 것

-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는 이용아동 중 장애□발달장애아동 등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또는 드림스타트 센터에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병원 및 장애아동이용기관(시설)과 연계□협력(상담, 치료 등)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시설 안전 관리

(1) 보험 가입(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보험가입 의무)

-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건물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화재보험은 건물과 비품 등 지역아동센터 설비 모두를 대상으로 가입(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전원을 대상으로 각종사고에 대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보험 의무 가입

- 야외현장체험 프로그램시에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여행자 보험 가입
- 보조금으로 가입하는 모든 보험은 소멸형(적립금이 없는 보험)으로 가입

(2) 시설 안전 점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4(시설의 안전점검 등)

- 시□군□구는 시설장으로 하여금 매 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토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시설장은 응해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가능
  -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아동의 실내외 활동 시 안전을 위해 아동을 철저히 보호□감독해야 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요령 습득, 구급약 및 비상의약 비치 등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및 환경을 조성□관리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제19조에 의거 소화설비(수동식소화기, 투척용소화기 등) 등을 기준에 맞게 설치

마. 운영위원회 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1) 운영위원회는 시설장 1인을 포함하여 5~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설장이 추천하여 시□군□구의 승인 후 위촉(임기는 3년으로 하되, 시설별로 조정) 가능함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 위원만 해당, 기존 위촉자는 인정)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4조 및 '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을 준용하여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2) 운영

- 반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재적의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수시회의 개최

-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 위원의 날인을 받아 센터 내에 비치하여 이용 아동, 학부모, 지역주민, 종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음(비공개사유는 공개해야 함)

-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칙을 법령 및 지침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하여야 함(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반드시 운영규칙에 포함시킬 것)

(3) 심의사항(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1항)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 및 이용 아동의 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후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등

(4) 보고사항(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3항)

-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 상기 사항 등을 운영위원회에 사전보고하는 것으로, 이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것은 아님

바.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시설장은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시·군·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다만, 시설장은 이용 아동 중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 약물의 오남용 예방
- 재난대비 안전
- 교통안전

- 아동복지법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동법 시행령 제58조 과태료 부과기준(1차 위반 10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에 의해 처분됨
- 지자체는 시설 점검 시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 조치
- 교육 자료는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참조

사. 문서관리

-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일지, 공문철, 종사자 인적관련 서류,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아동상담기록부, 사업계획서, 예산·결산서,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비품대장 등 운영상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

아.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인적자원(자원봉사자 등) 및 물적자원(후원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설을 운영함
- 시·도(시·군·구) 및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를 적극 구축하여 운영함

자. 행정처분

- 행정처분의 주체 및 종류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행정처분의 요건(아동복지법 제56조)
  -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될 때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설치목적의 달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아동복지시설의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아동복지법시행령 제53조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아동복지법시행령 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처분기준"이라 한다)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위반행위가 4개 이상이거나 아동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1차 위반 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가 시설의 장 교체 또는 시설 폐쇄 명령의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시설의 장 교체를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 폐쇄를 갈음하여 시설의 장 교체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않는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가.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1호	개선 명령	시설의장 교체	시설 폐쇄
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2호	시설 폐쇄		
다. 설치목적의 달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3호	시설 폐쇄		
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4호	6개월 이내 사업정지	시설 폐쇄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5호	6개월 이내 사업정지	시설 폐쇄	
바. 아동복지시설의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6호	시설 폐쇄		
사.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7호	개선명령	6개월 이내 사업정지	시설 폐쇄

과태료의 부과기준(아동복지법시행령 제58조 별표14 참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아동복지법시행령 제5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2항	150	300
나.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1항제1호	100	200
다.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1항제2호	200	300
라. 법 제69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75조제1항제3호	150	300

차. 보조금의 반환명령

- 보조금의 환수 주체 및 종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아동센터에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보조금 환수 요건(아동복지법 제61조)
  -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 지역아동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
  -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카. 행정사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 폐쇄,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행정절차법"상 처분 및 청문(의견청취)절차 참조

6. 예산(운영비) 사용

가. 운영비 사용

(1) 운영비 국고지원액은 인건비, 운영관리비, 프로그램비 등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

(2) 사용 기준

- 인건비의 사용
  - 인건비는 종사자 채용 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도 설정
  - 시설은 역할, 근무연차에 따라 차등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채용된 상근 종사자(생활복지교사)에게 인건비 최저기준*을 적용함(권장사항)

* 종사자 처우관련 참조하고 '12년 종사자 인건비 최저임금기준 : '12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안) 별표 1-4(복지관직원-관리직) 봉급지급 기준표 3급 1호봉 기준을 적용함

- 시설은 종사자 퇴직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적용 예외 : 근로기간 1년 미만,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퇴직금 산정방법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설정

* 1년미만의 퇴직자의 퇴직적립금의 경우 당해연도 분은 시□군□구청의 사전승인 후 프로그램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전년도 적립금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운영관리비 사용

- 운영관리비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여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등을 말함
- 사용기준에 열거된 항목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

● 프로그램비의 사용

- 프로그램비는 이용아동의 보호, 교육, 문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 프로그램비는 기본 운영비의 20% 이상을 반드시 지출하여야 함

● 운영관리비 사용의 제한

- 인건비와 운영관리비를 합한 금액이 기본운영비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시설의 월세, 시설 개□보수비, 차량 취□등록세, 각종단체 및 협의회 회비(연대활동비) 등은 보조금에서 지출 불가
- 물품구매시 취득단가는 30만원 미만으로 하되(단, 아동 학습용 컴퓨터□복사기는 취득단가를 100만원으로 함), 분할납부 방식으로 지출 금지. 다만, 아동 전용으로 사용하는 승합차 수리비 및 보험료, 화장실 등 시설 일부 개□보수비용, 아동 학습용 컴퓨터□복사기는 분할납부 할 수 있음

※ 지역아동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보조금 환수(아동복지법 제61조)

- 사용기준에 명시된 이외의 항목은 지자체와 사전 협의 후 사용가능하며, 지자체와 협의 없이 사용한 경우, 해당금액 전액 환수 조치

(3) 본 지침의 운영비 사용 기준외의 항목은"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집행

(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대상 시설 :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 운영비 지원을 받지 않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도 후원금 및 자부담 사용내역 등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사용 대상을 의무화함

※ ID발급 관련 문의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ww.w4c.go.kr) (☎ 02-3273-4133- 변경 가능)

- 지역아동센터는 보조금 신청□보고 등 각종 신청, 보고를 온라인으로 하고, 지자체는 보고된 정보를 기준으로 보조금 신청 교부 등 업무를 처리

- 지역아동센터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시 □이용아동명부 및 출석부□를 첨부하여 보고(시스템으로 처리가능하면 구비서류 첨부 등은 제외할 수 있음)

<운영비 사용기준>

관	항	목	기준 및 내역
사무비 (80% 이하)	인건비	급여	ㅇ 상근 종사자 인건비 상한(4대 보험, 퇴직적립금 포함) * 고용된 시설장, 생활복지사 인건비 최저기준, 근로기준법 및 관련고시 준수 ※ 대표자 겸 시설장인 경우 퇴직금 지급 불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2조)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운영관리비 (운영비) (80% 이하)	여비	ㅇ 종사자 교육비*(여비 포함) * 복지부□지자체, 중앙 및 시도지원단 주관 교육
		수용비 및 수수료	ㅇ 사무용품비, 집기구입비(성질상 자산취득비가 아닌 경우), 인쇄비, 도서구입비,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등 * 물품구입시 취득단가 30만원 미만으로 한정
		공공요금	ㅇ 공과금, 냉난방비 * 공과금, 냉난방비는 센터 전용공간에서 사용한 비용만 인정
		제세공과금	ㅇ 화재 및 아동 안전관련 보험 * 운영비 중 1순위로 집행
		차량비	ㅇ 차량보험료□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

관	항	목	기준 및 내역
			* 유류비 사용 센터는 차량운행일지(서식 5호) 및 유류수불대장(서식 6호)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용도로 사용 금지 * 농산어촌의 경우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차량정비유지비 사용가능
		자산취득비	ㅇ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아동 학습용 컴퓨터□복사기)
		기타운영비	ㅇ 자원봉사자 관리, 화장실 일부 시설개보수, 냉난방비(기름, 가스 등인 경우) * 냉난방비는 센터 전용공간에서 사용한 비용만 인정
사업비 (20% 이상)	프로그램비 (사업비) 20% 이상	보호프로그램비	ㅇ 아동복리후생비(위생 및 의료지원 등)
		교육프로그램비	ㅇ 학습 및 예체능교육비(강사비 가능)
		문화프로그램비	ㅇ 문화□체험 활동비 (강사비 가능) ㅇ 야외현장체험활동비
		아동정서지원 프로그램비	ㅇ 상담지원 (프로그램운영 등), 부모교육
		지역자원연계	ㅇ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아동지원 프로그램

나. 이용료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저소득아동과 가정여건이 어려운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함
- 지역 여건 및 센터별 사정 등에 의해 이용료 수납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장은 운영위원회와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 수납 가능
  - 이용료 한도는 월 5만원이며, 사이버 수업료, 개별 학습지, 교재비, 야외현장체험비 등의 실비 이용료로 한정
  -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소득 상태, 이용료 책정 근거, 월별 수납액을 운영비 신청시에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함
- 이용료 수납 대상
  - 이용료는 일반아동에게만 받을 수 있으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② 차상위, 조손, 다문화, 장애, 한부모 아동 대해서는 이용료 수납 금지

다. 후원금

- 후원금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또는 기타의 자산으로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함(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동법 제58조)
- 후원금영수증 발행 등
  -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4에 의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1조 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제3항 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 시설에서는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를 일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후원금 관리대장을 기록□비치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해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 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생략할 수 있음)
  -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전용계좌는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고, 구분된 사실을 후원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안내

    ※ 법인 산하의 시설이더라도 법인의 후원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시설 고유의 후원금 계좌를 두어야 함 ('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 지적사항)

- 후원 제한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대부분이 취약계층 아동이므로 이용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로부터의 후원금(물품)은 가급적 지양
-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기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함
- 후원금의 보고
  -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에 의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후원금(품)에 대한 수입 및 사용 내역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입력하고,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전산파일 포함,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9호 서식)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보고된 후원금(품)에 대한 사용내역을 행복e음에서 확인 후 승인 처리하여야 함

● 후원금 공개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고, 같은 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단, 후원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은 공개하지 말 것

※ 후원금 보고□공개가 미흡하므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업무 철저 필요('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 지적사항)

라. 운영비 등 재정관리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정부보조금과 후원금, 법인 전입금, 자체 부담금, 이용료 등을 포함하여 지역아동센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된 직접비용으로 투명하게 사용

※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아동센터 예산 집행 현황을 정기적으로(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점검

- 운영비는 계정별 통장을 별도로 구비하여 관리함

※ 정부보조금 통장(운영비와 지자체 급식비 분리 운영), 후원금 통장, 법인 전입금 및 자체 부담금 통장, 이용료 통장, 퇴직금 적립 통장을 별도 구비하고, 법인 후원금 통장을 제외한 모든 통장은 시설명(또는 시설명+시설장명 병기)로 만들어야함

- 운영비의 적절한 관리와 정확한 집행을 위해 아래 서식을 활용하고 필요한 지출 증빙서류 보관

※ "지역아동센터 활용서식 프로그램"을 참고로 하여 활용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홈페이지 www.icareinfo.info 참조)

● 인건비는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 지출은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거래로 행함

-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이라도 1만원 이상 지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

※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가맹점)에서는 1원 이상 집행시 현금영수증 발금 가능

- 지역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군구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지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그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구비
-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인 경우에는 5만원 이상 집행 시 온라인(On-line)입금 활용하고, 그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구비

● 장부관리는 총계정원장, 현금출납장, 지출분개장 기입을 원칙이나, 시설정보시스템 사용시 매월 마감후 관련 서식을 출력 비치함으로 대체 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의무 시행

● 운영비 정산은 월별 또는 분기별 정산으로 처리하되 연간 사업계획에 따른 계절적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출 비율이 일시적으로 맞출 수 없을 때에는 운영비 중 일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고, 반기별 정산도 가능함

7.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가. 공립지역아동센터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지역아동센터로서 건물의 소유 또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있는 시설

나. 명칭

● 명칭 사용은 시군구립지역아동센터 또는 공립지역아동센터·지역아동센터를 사용할 수 있음

다. 공립지역아동센터의 기능 및 역할

● 거점형 센터로서 지역사회 연계·협력의 모델 창출

●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종사자 연수 등 지원

● 이용아동 및 종사자 적정수준 운영모델 제시

● 기존 센터와 차별성 있는 운영

라. 설치 및 운영절차

- 지역 내 방과후 돌봄수요 등을 감안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설수급 계획 등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추진
  - 설치 및 운영절차 등은 기존 신규시설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설치

마. 운영지원

- 운영비 지원시기
  - 설치신고 후 운영시점부터 운영비 지원
- 운영비 지원금액
  - 운영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기준의 50%범위 추가 지원가능

    ※ 단, 종사자 기준은 1명을 추가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거점형(필요시 특수목적형) 센터로 지정하여 기존 센터와 협력·연계 모형 등 개발하기 위해 지역사회내 지역아동센터와 협력해야 함

바. 운영주체 선정

- 시·군·구 직영운영 또는 위탁운영을 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탁월한 법인이나 5년 이상 지역아동센터 운영경험이 있는 개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합리적인 선정기준 및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선정절차 추진
  -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를 참조하여 5년 이내로 하고 시설의 일괄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위탁기간은 3년 이상을 권고함

사. 기타

- 기타 운영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용아동, 회계규칙 등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8. 지역아동센터 2013년 평가

가. 평가대상 (※ 세부사항은 별도 공문 시행 예정)

- 신규 진입평가
  - 2011년 1월 ~2012년 2월까지 신고/운영 중인 신규 센터
- 기존 심화평가
  - 2009년 12월 31일 이전 신고/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 중 시도별 비율에 따라 평가대상 시설을 지자체에서 선정(반드시 3년 이내 평가를 받아야 함)

나. 평가추진체계

보건복지부

- o 평가업무의 총괄 및 지원
  - 평가 업무위탁(평가센터 구성 등)
  - 평가사업 운영방안 및 편람 확정
- o 종합평가결과 활용 및 정책반영

시도

- o 평가대상 현황파악
- o 시군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평가 지원
- o 평가결과활용, 정책반영
- o 평가결과통보

시군구

- o 평가대상시설 신청접수 및 시도 보고
- o 지역아동센터 점검시행 및 결과활용
- o 현장평가 모니터링

지역아동센터 평가센터

- o 평가편람 작성
- o 평가계획 수립
- o 평가위원 구성
- o 평가업무 지원
- o 지역아동센터 평가설명회
- o 지역아동센터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실시
- o 현장평가 모니터링
- o 종합평가보고서 작성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 o 지역아동센터 평가 지원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 o 시도별 평가위원 추천 및 관리
- o 지역아동센터현장 평가지원(평가안내 및 홍보, 현장평가 모니터링, 교육지원 등)

(1) 평가진행절차

평가대상 선정	- 대상시설 선정 - 평가비용 교부(시도군구→대상센터)	시도 및 시군구
▽		
평가업무위탁	- 평가센터 업무위탁 - 평가설명회, 평가위원교육	평가센터
▽		
평가신청	- 평가신청서 제출 (평가비용 및 평가자료 입력)	평가대상 센터
▽		
평가산정	- 온라인 및 현장평가 결과 심의 (평가결과 이의제기 및 보정)	평가센터
▽		
평가결과 통지	- 평가결과통지 및 운영비 반영	평가대상센터 시도 및 시군구
▽		
재평가 실시	- 재평가신청서 제출 (평가비용 및 평가자료 입력)	평가대상 센터

다. 평가비용

- 진입평가 및 심화평가 비용은 전액 지원함
- 평가결과 미흡시설에 대한 재평가 비용은 전액 자부담

라. 평가절차

단계	진입평가 주요절차 및 일정		추진체계
평가 편람 개발 및 준비 단계	공통	- 2013년 평가계획수립('13. 1) (평가사업 세부실행계획 수립) - 평가편람 확정 및 공지('13. 1)	- 보건복지부□평가센터
	진입평가	- 진입평가 대상센터 선정('13. 1) - 진입평가 대상센터 평가 설명회('12. 11~12) - 진입평가위원 교육 ('13. 1) - 진입평가 온·오프라인 신청('13. 1) (온라인 신청 시 평가비 납부)	- 시도 → 시□군□구 - 평가센터 - 평가센터 - 평가대상센터 지자체
	심화평가	- 심화평가 대상센터 선정('13. 5) - 심화평가 온·오프라인 신청('13. 6) (온라인 신청 시 평가비 납부) - 심화평가 대상센터 평가 설명회('13. 6)	- 시도→ 시□군□구 - 평가대상센터 - 평가센터
평가 실시 단계	진입평가	- 현장평가자료 준비(현장평가 이전) - 서면평가서 작성 및 제출('13. 1) (온·오프라인 모두 제출) - 서면평가자료 검토 및 현장방문평가('13. 2) - 이의제기 접수 및 처리(현장방문평가 기간) - 재평가 ('13. 6)	- 평가대상 센터 - 평가대상 센터 - 평가센터 - 평가센터 - 평가센터
	심화평가	- 현장평가자료 준비(현장평가 이전) - 서면평가서 작성 및 제출('13. 6) (온·오프라인 모두 제출) - 심화평가위원 교육 ('13. 5) - 서면평가자료 검토 및 현장방문평가('13. 6~ 8) - 이의제기 접수 및 처리(현장방문평가 기간)	- 평가대상센터 - 평가대상센터 - 평가센터 - 평가센터 - 평가센터
평가 결과 정리 □ 활용 단계	진입평가	- 진입평가 평가결과 데이터정리 및 제출('13. 3~4) - 평가결과 우편 통보('13. 4)	- 평가센터→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지자체→ 평가대상센터
	심화평가	- 심화평가 평가결과 데이터정리 및 제출('13. 11) - 평가결과 우편 통보('13. 11) - 종합평가결과보고서 작성('13. 11~12)	- 평가센터→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지자체→ 평가대상센터

마. 평가결과

- 평가 결과는 절대평가 지표에 따라 점수로 산정하고 최저기준점을 60점으로 하고, 미흡(60~69점, D), 보통(70~79점, C), 양호(80~89점, B), 우수(90점이상, A)으로 분류

- 평가 미참여 센터는 운영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되, 평가결과 최저기준점(60점) 이상 센터는 운영비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

- 평가 결과 최저기준점(60점) 미만 센터
  - 운영컨설팅에 의무참여 후 재평가 실시하되, 재평가 비용은 전액 자부담으로 함
  - 진입평가 : 평가 및 재평가 미참여 센터는 익년도 진입평가 우선대상 선정함
  - 심화평가 : 평가 및 재평가 미참여 센터는 2년 자부담 시설로 함

- 재평가 결과 최저점 이하인 경우
  - 진입평가 : 익년도 진입평가 우선 대상 선정
  - 심화평가 : 재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날의 익월부터 2년간 자부담 시설로 함

- 평가 결과 미흡(60점~69점) 시설 : 시설 운영역량 제고를 위해 컨설팅 의무화

- 기존 심화평가 시설 중 평가결과는 관할 시군구에 관련 내용을 등록하고 다음 연도 운영비 지급에 반영

Ⅲ 협조사항

1. 지자체 행정 사항

가. 지자체 제출사항

- 시도는 운영비 지원현황을 시군구 현황을 취합, 보건복지부로 보고 (시도 → 보건복지부, '13.1.31까지)
  - 운영비 지원 상세 내역(지원 개소수, 지원금액, 감액 지원 및 중단 개소수 등)
  -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현황(예산, 지원기준, 지원단가, 지원액/월 등)
  - 지자체 별도 지원 현황(사업명, 예산, 지원내용, 지원단가, 지원액/월 등)

    ※ 제출방법, 제출양식 등 관련내용 별도 공문 시행

- 시설 관련 문제 발생시 신속한 보고 체계 유지 (수시, 시군구, 시도→보건복지부)
  - 시군구는 시설 관련 비리, 운영상 문제 발생, 언론보도 등의 문제 발생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로 신속히 보고

나. 지자체 협조사항

- 시군구는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매년 2회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홈페이지(www.icareinfo.info)에 입력(전반기 : '12.7월, 후반기 : '13.1월) ※ 별도 공문시행
- 지자체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시설의 운영상황, 아동보호지도 실태, 안전점검, 예산집행 실태 등에 대해 현지점검 실시

  ※ 지자체 점검결과는 시도에서 취합하여 보건복지부로 제출(별도 공문시행)

- 지자체는 보조금 환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을 준수하여 처리

- 신규 시설 운영컨설팅 의무화에 따른 조치사항
  - 시□군□구는 신규 시설 신고 후 15일 이내에 시도지원단에 신고 사실을 통보하고, 시도지원단은 운영컨설팅 계획(시설장 현장실습 포함)을 작성하여 거점센터에 통보하여야 함
- '13년 지침관련 준수사항 시설에 고지□안내
  - 시설운영과 관련한 변경된 지침사항에 대해 시설에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2. 시설 협조사항

가. 지자체 보고사항 협조

- 시설은 '13년도 지역아동센터 운영계획 및 운영위원회 설치현황 제출 (시설→시□군□구, '13.2.28까지)
- 지자체는 조례, 지침 등에 근거한 지자체 제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 종사자 임면, 겸직신고, 예산집행 등 지자체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인지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사항을 사전에 고지

나. 시설 협조사항

- 시설은 지역아동센터 현황(D/B) 조사시 시설현황을 성실하게 제공하여 향후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
-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는 종사자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교육 안내, 교육 여비지급, 대체인력 투입 등의 조치 이행
- 지역아동센터 휴□폐지시 이용아동들이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
  - 보호자에게 중단 예정계획을 통보하고, 인근 이용가능 돌봄 시설의 이용가능 인원, 위치 및 차량 운행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내

참고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

- 사업목적 : 지역아동센터에 전세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시설환경 개선, 안정성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함

- 사업개요 : 2006년 시설기준 미달, 저소득 밀집지역 등 열악한 시설여건의 지역아동센터에 시설전세자금 지원을 통해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지원

  - 지원대상 및 예산

    □지역아동센터 : 249개소 12,750백만원 (복권기금)
    (서울37, 부산15, 대구5, 인천12, 광주18, 대전9, 울산7, 경기38, 강원13, 충북15, 충남7, 전북19, 전남21, 경북8, 경남17, 제주8)

    □지원단가 : 서울 80백만원, 지방 50백만원

    □보조율 : 복권기금 100% 지원

  - 지원체계

    □보건복지부 : 전세자금지원계획 수립□시행, 사업추진결과분석□평가

    □시□도 : 지역내 전세자금지원계획 수립□시행, 선정위원회 구성□심사 및 선정, 사후관리

    □시□군□구 : 지원신청서 접수 및 시□도에 제출, 현장확인, 전세계약 체결, 지원시설 입주관련 세부사항진행, 전세권 설정 및 관리, 지원시설 사후관리

- 전세자금운영

  - 지원기간과 연장 : 전세자금 지원기간은 전세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이 양호하며 지속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재계약체결 가능 (지자체판단)

  - 신규 전세자금 지원 및 선정 : 지역아동센터 신고폐지 및 이전, 사용계약 해지사항 등으로 인한 전세자금 반납시 발생하는 전세자금의 활용

    □시□군□구는 전세자금을 시□도로 반납

□시도는 신규 전세자금 희망 지역아동센터 공지 및 신청접수

□시도는 자체 전세자금선정위원회를 구성선정

□해당 시군구로 전세자금 교부, 시군구는 전세자금 집행 및 관리

다음의 경우 체결된 사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1. 전세자금 임차건물을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
2. 시설운영자가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허위나 거짓된 내용이 있는 경우
3. 전세자금 지원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시설운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서설운영자의 사정으로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전세시설의 임차 및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7. 월세, 제세공과금이 있는 경우 3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시설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8. 사용계약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9. 사용시설을 전대하거나 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10. 기타 임대차 및 사용계약에 정한 사항을 사용인 또는 임대인이 위반하는 경우

● 반납액에 따른, 신규 추가수요가 없을시 에는 국고로 반납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 기타 운영 참고 사항

- 전세권 설정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 전세자금지원에 사용되는 직접비용은 시설운영자가 부담
- 전세임대 계약 체결시, 시군구청장 명의로 건물소유자와 계약 : 전세자금 지원액 상향조정액 범위를 초과하는 건물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에 대하여는 시설운영자가 부담하며 전세임대 및 사용계약서에 이를 표시하여 공증하며 사업종료시 시설운영자에게 반환함
- 전세계약 체결 전에 당해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및 압류 등 임차기간 종료시 전세보증금 반환 저해요소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계약시 전세권 설정, 보증보험 등을 통하여 전세금 회수장치를 마련함
- 시도(시군구)는 시설운영자의 의견 및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전세시설을 선정함에 있어 안정성과 안전상에 있어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서 식 모 음

지역아동센터 운영

<서식 1호>

근 무 상 황 부

연번	종별	사용기간	사용시간	사유	연락처	결재	
						담당	시설장

※ 종별 : 연가, 병가, 공가, 출장, 조퇴 등

<서식 2호>

출 석 부

연번	성 명	1(월)	2(화)	……	30(수)	31일(목)
1	홍길동					

<서식 3호> 본서식은 시□군□구청 보관용입니다.

(앞쪽)

돌봄서비스 □제공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이내
이용 아동 일반 사항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성 별	남 / 여	
	학교/학년/반		휴대전화		
	건강상태	□ 양호 □ 보통 □ 허약 □ 기타( )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가족 사항	성 명	관 계	연 령	직 업	특이사항
가정 환경	주거형태	□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 아파 □ 기타( )			
	거주상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특이사항	□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 맞벌이 가정 □ 소년소녀가정 □ 기 타( ) ※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정부의 지원을 받고있는 세대를 제외하고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세대내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			
돌봄서비스 관련사항	□ 돌봄 필요시간(시 ~ 시) □ 급식 필요여부 ( ) □ 토요일 이용희망여부( ) □ 방과후교실 이용여부( )				
기타욕구 및 참고사항					

상기 아동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하여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 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동의자(보호자) (인)

시□군□구청장 귀하

(뒤쪽)

신청안내

신청자격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제출하는 곳	관할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 지역아동센터 경유)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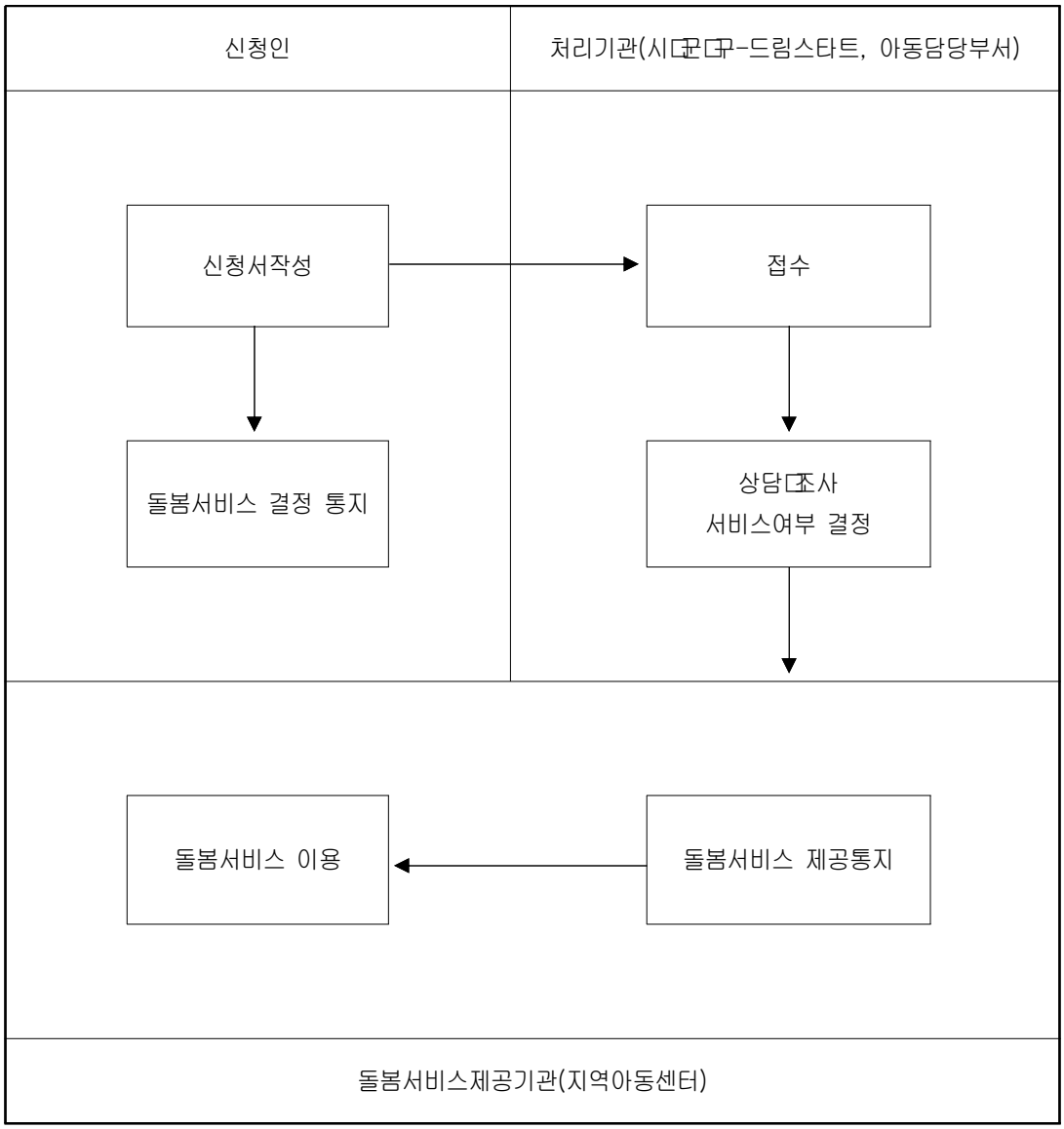

<서식 4호> 본서식은 지역아동센터 보관용입니다.

돌봄서비스 결정통지서					처리기간 20일 이내
이용 아동 일반 사항	성 명	(한글)			사진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학교/학년/반	휴대전화)			
	건강상태	□ 양호 □ 보통 □ 허약 □ 기타( )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가족 사항	성 명	관 계	연 령	직 업	특이사항

가정 환경		
	주거형태	□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 아파 □ 기타( )
	거주상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시□군□구 인증사항	□ 수급권자 □ 차상위가정 □ 한부모가정 □ 기 타( )

통지사항 (시□군□구 작성)	□ 돌봄 이용요일(전일,) □ 돌봄 필요시간(시 ~ 시) □ 토요일 대상여부( ) □ 급식 대상여부( ) (서비스 개시일은 돌봄서비스 신청일로 한다)

상기 아동은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여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여 통지하니 귀 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월 일

시□군□구청장 (인)

지역아동센터장 귀하

<서식 5호>

차량운행일지

차량번호 :

연번	일자	출발지 (출발시각)	도착지 (도착시각)	주행거리	경유지 및 목적지	비고	결재	
							담당	시설장
				km				

※ 차량운행일지는 차량에 비치하여 관리

<서식 6호>

유류수불대장

연번	일자	주유량	금액	주행 총거리	비고	결재	
						담당	시설장

※ 주행총거리는 주유 당시의 주행총거리를 말함.